

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

한세엠케이 주식회사

<조문 순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3조(적용범위)	2
제4조(안전보건방침)	2
제5조(재해예방 의무)	3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6조(안전보건조직)	3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4
제8조(관리감독자)	4
제9조(안전관리자)	5
제10조(보건관리자)	6
제11조(산업보건의)	7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8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신분보장)	9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 의결사항)	9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9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안전보건계획수립 및 문서화)	10
제17조(정기안전보건교육)	10
제18조(채용 시 교육)	11

제19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2
제20조(특별안전보건교육)	12
제21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12
제22조(물질안전보건교육)	14
제23조(직무교육)	14
제24조(안전보건교육강사)	15
제25조(기록 · 보존)	15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6조(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실행)	16
제27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16
제28조(전기설비 안전)	17
제29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19
제30조(안전검사)	19
제31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20
제32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20
제33조(작업중지)	20
제34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21
제35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21
제36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22
제37조(안전보건진단)	22
제38조(교통재해예방)	22
제39조(비상조치계획)	22
제40조(피난 및 대응훈련)	23
제41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23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2조(작업환경측정)	23
제43조(근로자 건강진단)	25
제44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26
제45조(안전보건보호구)	26
제46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27
제47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28
제48조(근로시간 연장제한)	28
제49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28
제5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29
제5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30
제52조(근골격계질환예방)	31
제53조(유해요인 조사)	31
제54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32
제55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32
제7장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제56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33
제57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33
제5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등)	33
제59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33
제8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60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34
제61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4
제62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35
제63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35

제9장 위험성평가

제64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35

제65조(위험성평가 교육) 36

제66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36

제67조(위험성평가 주기) 36

제68조(위험성평가 문서화) 36

제10장 보칙

제69조(포상) 37

제70조(징계) 37

제71조(문서보존연한) 37

제72조(변경절차) 38

제73조(준수) 3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한세엠케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상시근로자 수 :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임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일정 사업기간 내(1년 이상인 경우 1년, 1년 이내인 경우 전체기간을 말함)의 근로자 연인원(1년 이내인 경우 전체인원수)을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6.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7.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8.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 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9.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0.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애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뿐만이 아니라 아차 사고 등을 포함한다.
11.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사내도급사업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사업주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사업주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회사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회사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
· 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①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나.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
- 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를 것
- 마. 지속적으로 회사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 이행

2. 생산부서(장)

- 가. 회사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생산활동이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3.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부서(장)

- 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
- 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4. 근로자

- 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나.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6조(안전보건조직) 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라인-스텝형 원칙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② 라인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구성하고, 스텝조직으로 별도의 부

서를 둘 경우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방화관리자, 환경·가스·전기·소방·교통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관계자가 같은 조직의 소속 직원이 되도록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조직·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회사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회사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회사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관리자) ① 회사는 이 규정 제7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회사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제75조의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가 설치된 경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제8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회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

다.

⑥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회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회사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⑨ **회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교체하거나 늘리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회사는 이 규정 제7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산업보건과의 직무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
7.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8. 회사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9.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10.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1.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3.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4.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5.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④ 회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⑥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 6에 따른다.

⑦ 회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회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⑨ **회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 교체하거나 늘리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보건의) ①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③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직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한다.
- ④ 회사는 산업보건직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회사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사의 대표자
가. 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회사의 담당자) 1명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 회사

의 담당자) 1명

4. (산업보건직이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 산업보건의 1명

5. 그 밖에 회사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회사 부서의 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 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신분보장) ① 회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 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 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회사는 이 규정의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회사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방송, 사내보 및 사내 인트라넷
2. 게시판 게시

3. 회사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안전보건계획수립 및 문서화)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당해 연도 말일(또는 매년 1월말)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1.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채용 시의 교육 :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특별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근 사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④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7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의 근로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채용 시 교육) ① 회사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적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회사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제18조 제2항과 같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8조(채용 시 교육), 제19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① 회사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차.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가.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1시간 이상

나.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 면제

2.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2시간 이상

④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가.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나.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라.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사.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아.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카.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 라목에 따른다.

제22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3. 취급상의 주의사항
- 4. 적절한 보호구
-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3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회사에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산업안전보건법 제 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②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보존) ①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6조(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월초에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발표 시 전 부서에 통보하고, 생산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회사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대여하는 경우

가.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나.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 a.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 b.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 c.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다. 해당 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회사가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회사가 대여 받은 경우

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b.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나. 회사가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28조(전기설비 안전) ① 회사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회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 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4.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

한 장치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④ 회사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⑥ 회사는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 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 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⑦ 회사는 충전 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 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 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 장치 등의 작업

제29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② 회사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때에는 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절차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③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제30조(안전검사) ① 회사는 회사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생산부서에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2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회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회사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3조(작업중지)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회사는 작업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회사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이 규정의 제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⑥ 안전보건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 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회사의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하여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 위탁한 경우에 한함)
- ⑨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장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보충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회사 실정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제37조(안전보건진단)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작업장내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곳은 고용노동부 지방청(또는 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제38조(교통재해예방) ① 회사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

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종업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39조(비상조치계획)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0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41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시 반드시 함께 협의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2조(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작업환

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가.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회사는 작업환경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⑤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료

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⑦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유해물질
2. 안전보건규칙 별표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제43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6. (회사의 자율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자율 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또는 안전보건담당부서)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 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⑦ 제6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회사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⑨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교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 중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⑩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회사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고 관리해야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보건보호구) ① 회사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사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별도로 정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서 규정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고,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기 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근로시간 연장제한)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갯(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49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서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① 회사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등 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나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또는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항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명칭 : 제품명

나.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다.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라.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마.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바. 공급자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

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 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회사는 규정 22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회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유해요인 조사) ① 회사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④ 회사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강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55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 반경
2.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3. 콘베이어벨트 등 순환작업의 속도

4. 기타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

- ③ 회사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회사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갭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장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제56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① 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57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회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2.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 3. 도급사업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나. 작업장 순회점검
 - 다.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라.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4. 사내하도급업체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5.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6. 발파작업, 화재발생 및 토석의 붕괴사고 발생에 대비한 경보운영과 사내하도급업체 및 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7.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회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9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회사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② 회사는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60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회사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61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

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⑤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62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회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익년 1월중에 전년도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63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회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회사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 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③ 근로자는 회사에 2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위험성평가

제64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65조(위험성평가 교육)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회사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본 규정 제 67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67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68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4. 위험성 결정의 내용
5.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한다.

제10장 보칙

제69조(포상)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회사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70조(징계) ① 회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71조(문서보존연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과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72조(변경절차)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3조(준수)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